

경운대학교 장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경운대학교 장학규정(이하“본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운대학교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운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학비감면에 관계되는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자격) 장학금의 수혜 자격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
3.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4.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자녀
5. 경운대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
6.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서 학내 근로를 원하는 자
7. 수혜 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8.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구성) 장학생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1.10.01.>

1.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3. 삭제<2021.10.01.>
4. 사무업무를 위한 위원회의 간사는 장학업무의 주무자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제도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학시행지침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관장) 장학관련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제8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의 종류 및 지급규정

제9조(장학시행지침) 교학처장은 매년 장학시행 지침(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장학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0.01.>

제10조(장학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되며 종류 및 선발기준은 장학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① 교내장학은 등록금성 장학금 및 비등록금성 장학금, 대응 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장학시행 및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금성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2. 비등록금성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가 아닌 학습보조 선택경비 및 학습 성과, 대학발전 기여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3. 대응 장학금 : 국가 및 각종 교외사업 시책에 의거 사업비와 상응하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학금

② 교외장학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이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금 및 국책사업의 지급지침에 따라 선정되어 지급되는 장학금
2.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관의 지급지침에 따라 선정되어 지급되는 장학금
3. 사설 및 기타 장학금 : 외부의 장학법인 단체 및 개인이 제공하는 지급지침에 따라 선정되어 지급되는 장학금

제11조(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정규학기 기준으로 8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은 인정되는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로 한다. 단, 보훈 장학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 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제12조(자격상실)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수혜자격을 박탈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

1.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2.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 된 자
3. 장학금 수혜 임무를 사퇴한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중지가 결정된 자

제13조(이중지급금지) 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장학금 수혜 후 의무가 따르는 기여장학 수혜를 받은 자
2.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외부지정 기탁장학 수혜를 받은 자
3. 교육훈련비, 연수비, 기숙사비,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포상장학 등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은 자
4. 저소득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복지장학, 장애학생장학을 받은 자
5.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자.

② 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수혜한 자가 유리한 장학으로 추가선정 된 경우 기존 수령장학금은 반환한다. 단, 장학생 편의를 위하여 기 수혜장학금과의 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지급) 본 규정에 의해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등록금고지서에 장학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금 수혜여부가 등록금 수납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장 장학생 선정

제15조(선정방법) ① 성적우수장학생(이하 “성적장학생”)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10.01.>

1. 배정범위 내에 학부(과)회의를 통하여 성적장학생을 선정 후 학부(과)장의 추천된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학처장은 학생지도 및 기타사항을 감안 성적장학생의 자격여부를 최종 심사, 조정 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그 명단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3. 성적장학생은 평점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며, 평점과 총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정하되, 최대한 배정인원을 감안하고, 필요시 장학생 배정인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실습·봉사 점수는 제외한다.)
- ② 전일제 정시제의 성적사정은 입학등록시의 학습구분으로 한다.
- ③ 그 외 장학생은 본 규정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

제16조(선정) ① 성적장학생은 학부(과)별로 제출된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후 선정한다.

② 지급수혜기간이 있는 계속장학생의 장학금은 계속지급기준을 확인하여 학비감면 하며, 등록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 그 외 장학생은 본규정 및 장학시행지침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7조(장학생교체) 장학생으로 이미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교학처장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1. 교외장학생으로 추천 혹은 선정되었을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장 교외장학금

제18조(교외장학금추천)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외의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들이 위탁한 재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01.>

1. 교외 장학재단에서 해당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기탁을 하였을 때에는 교학처에서 해당학부(과)에 의뢰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이 선정한다.
2. 해당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부(과)별 윤번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수혜 혜택이 장기적이거나 클 경우는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 교외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자를 추천한다.
4. 보훈장학 대상자는 성적장학사정 중복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5. 교외장학금은 교학처장이 장학금의 선정과 지급을 관장한다.

제19조(교외장학금의 관리) ①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장은 교학처를 경유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직접 받은 장학금에 대하여 이를 교학처장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장학금은 재무과에 입금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③ 기관에서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고하여 학생의 장학금 수혜실적에 등재하도록 한다.

제6장 장학사정관제

제20조(목적) 장학사정관제는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저소득 학생에게 맞춤형 장학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별 상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 학생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장학사정관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장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현에 감시 및 실사, 검증
2.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가정형편, 성적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
3. 저소득 장학 추천
4. 갑작스런 가계곤란 학생의 상담 및 장학금 추천
5. 기타 합의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사무관장) ① 장학사정관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장학사정관은 관장이 단과대학 별 1인 이상을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01.>

② 장학사정관의 역할은 장학사정관 회의에서 결정된 맞춤형 장학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상담 후 주무부서로 장학생을 추천한다.

③ 장학사정관장이 저소득 학생으로 추천된 자의 장학을 검토하여 총장에게 저소득 장학을 건의한다.

제23조(우선배정) 저소득 학생의 장학금 배정은 장학사정관회의에서 우선배정 학생을 검토하여 차등지급한다.

제24조(비밀유지) 장학사정관 및 장학업무 주무자는 개별학생의 개인정보(소득분위 등)에 속하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01.>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